

복지위원회 규정

제정 1994. 2. 21
제4차 개정 2019. 06. 25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상지대학교 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함)라 한다.

제2조(목적) 이 위원회는 교직원 및 학생복지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개선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복지시설의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과 건의
2. 구내 복지시설(식당, 매점, 자동판매기 등)의 사업자선정, 임대, 계약 및 관리 감독
3. 사업계획 및 예·결산
4. 복지기금의 조성 및 사업수익의 관리 운영
5. 학생복지위원회 활동에 관한 자문과 지도
6. 학생복지만족도 조사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6.21)
7. 그 밖에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항 변경 및 개정 2016.06.21)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총장이 위촉하는 3인 내외의 전임교원, **학생행복처장**, **기획평가처장**, 생활관장, 노조위원장이 추천하는 노조대표 2인과 학생을 대표하여 총학생회장 및 총학생회장이 추천하는 1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11.1., 2019.06.25)

③ 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 개정 2005.11.1)

제5조(위원장) 위원장은 **학생행복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9.06.25)

제6조(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학생행복처장**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19.06.25)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7조(회의소집과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관계 부서의 직원중에서 총장이 임명 한다.

제10조(평가주기/활용) 학생복지 만족도 조사 평가는 1년 단위로 실시하고 **학생행복팀**에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위원회는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후 개선사항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여 차기연도에 반영한다. (조 신설 2016.06.21.) (개정 2019.06.25)

부칙

이 규정은 199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7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219, 2005.11.1)

이 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498, 2016.06.21)
이 규정은 2016년 0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330, 2019.06.25)
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